추계예술대학교

2017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구성단위	의원정수	재적의원	참석의원
교 원	2	2	2
직 원	1	1	1
학 생	3	3	3
외 부	1	1	1
회의개최 통보일		2017. 1. 11.	

1. 일 시 : 2017년 1월 26일 (목) 14:00 - 15:00
2. 장 소 : 창조관 8층 소회의실
3. 출결사항
   - ㅇ 참석위원(7인) : 김용배, 서영덕, 나인수, 최하늘, 박진주, 이기로, 전창하
   - ㅇ 결석위원(없음)
4. 부의안

   제1호 201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(안) 심의.

   제2호 2016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제3호 2017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제4호 잉여금처리원칙(안) 심의.

   제5호 2016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결과(안) 심의.

5. 회의내용

   가. 성원보고

   ㅇ **간사 정현주** 위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위원 7명 중 7명 전원 참석 보고하고 2017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.

   나. 개회

   ㅇ **위원장** 연이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개회하다.

   다. **부의안 제1호 201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(안) 심의.**
   부의안 제2호 2015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제2차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심의.
   부의안 제3호 2016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자금예산(안) 심의.

   ㅇ **김용배 위원장** 안건 제1호, 제2호, 제3호는 등록금, 추경예산 및 자금예산에 관한

것으로 기획팀 예산담당자의 설명을 함께 듣고 안건 논의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금번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기획팀장이자 본 위원회 간사인 정현주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(예산담당자 정현주 간사 설명)

ㅇ **정현주 간사** 부의안 제1호, 제2호, 제3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2017학년도 등록금은 2016학년도 등록금액과 동결임을 설명하다.

ㅇ **최하늘 위원** 등록금이 학년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.

ㅇ **서영덕 위원** 학년별 등록금을 학년 승급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학년이 동일 등록금을 책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문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 이후 등록금 책정시 결정된 사안임을 설명하고, 등록금을 학년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책정할 시 등록금인상 상한제에 위촉이 되는지 재계산 해 볼것임을 설명하다.

ㅇ **전창하 위원**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기금을 헐어 쓴 해가 올 해가 처음인지를 질문하다. 감가상각비를 계상치 못 할 경우 건물보수나 개축에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다.

ㅇ **김용배 위원장** 향후 몇 년간 감가상각비를 전부 계상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, 건축물관리 일부는 계속 하고 있지만,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어렵겠다는 설명을 하다.

ㅇ **최하늘 위원** 추계기념관을 신축하는 비용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가계곤란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인지와 지급기준을 질문하다.

ㅇ **나인수 위원** 교내장학금에 30% 가계곤란장학금이 배정되었으며, 지급기준은 소득분위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음을 설명하다.

ㅇ **정현주 간사** 감가상각비를 임의건축기금에 계상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2016학년도에 당해 감가상각비의 1/6밖에 계상치 못하여 목표액 40억은 아직 달성치 못하였음을 설명하다.

ㅇ **이기로 위원** 정원감축이 전국대학에 모두 적용되었는지를 질문하다.

ㅇ **정현주 간사**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등급에 따라 감축율이 다른 것으로 설명하다.

ㅇ **최하늘 위원** 예비비가 2016학년도에 비해 많은 감소폭인데 문제가 없냐고 질문하다.

ㅇ **전창하 위원**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예상항목인데 우려를 표하다.

ㅇ **박진주 위원** 잉여금을 반드시 시간강사료에 배정해야는지를 질문하다.

ㅇ **정현주 간사** 직접교육비에 배정해야 하며, 시간강사료가 예산성립시 전액 계상하지 못하여 매 해 이월금을 1차 추경 시점에 시간강사료에 배정하여 왔음을 설명

하다.

- ㅇ **전창하 위원**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심의하기를 요청하다.
- ㅇ **나인수 위원** 동의하다.
- ㅇ **전 위원** 재청하다.
- 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다.

라. 부의안 제4호 잉여금처리원칙(안) 심의.

(잉여금처리원칙에 대하여 간사이며 기획팀장인 정현주 설명하다.)

- 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이 마땅함을 제안하다. 시간강사료는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잉여금을 직접교육비에 반영하고 그 중 시간강사료에 반영함을 설명하다.
- ㅇ **나인수 위원** 동의하다.
- ㅇ **전체 위원** 재청하다.
- ㅇ **김용배 위원장**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다.

마. 부의안 제5호 2015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결과(안) 심의.

- ㅇ **김용배 위원장** 총무팀 담당자의 설명을 부탁하다.

(박종우 입장)

- ㅇ **박종우**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11월 초 교육부에 학교부담액과 법인부담액을 신청하였는 바, 11월 말에 교육부에서 신청(안)대로 승인 한 사안으로 승인사항에 대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 8
- ㅇ **서영덕 위원** 법인부담금이 1억임을 언급하고 원안에 대해 동의하다.
- ㅇ **전체 위원** 재청하다.
- ㅇ **김용배 위원장** 기타 의견이 있음을 질문하였으나 기타 의견이 없어 부의안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(박종우 퇴장)

6. 폐회

- ㅇ **위원장** 기타 의견이 없어 2017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잘 개최되었음에 감사 인사 말씀을 끝으로 15:00경 본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17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서류 1부. 끝.

2017. 1. 26.

기록 간사 정현주

위원장 김 용 배 (인)

교원위원 서 영 덕

학생위원 최 하 늘

학생위원 박 진 주

학생위원 이 기 로

직원위원 나 인

외부위원 전 창 하